

**사립유치원 지원 및
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**

2021. 3. 11

교육부

목 차

I . 현황 및 추진 배경	1
II . 추진 경과	2
III . 주요 과제	2
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	3
②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	4
③ 사립유치원 투명성·책임성 강화	5

I. 현황 및 추진배경

□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로 인한 폐원 유치원 급증

- 만 3~5세 유아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* 중이며,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도 점차 증가**하는 추세

* 만 3~5세 유아 수(만명) : ('15) 140 →('16) 138 →('17) 134 →('18) 130 →('19) 127

** 폐원 사립유치원(개원) : ('16) 56 →('17) 69 →('18) 111 →('19) 257 →('20) 261

-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장기화 등으로 많은 사립유치원이 운영난 호소

※ 휴업장기화에 따른 운영난 경감 및 교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추경 예산 사업 완료('20.3)

⇒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내실 있는 사립유치원 육성 지원

□ 국공립-사립 및 사립 유치원 교직원 간의 처우 편차 발생

-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은 국공립유치원 교원 수준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

-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이 개정*되어 시행 예정('22.3.25.)으로 예산 확보, 세부 기준 마련 등의 사전 준비 필요

* 육아 휴직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(시행령 제24조의6)

-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도록 했으나 과반수의 유치원이 이를 미반영한 실정

※ 전체 사립유치원(3,585개원) 중 1,907개원(53.2%)에서 봉급수당 관련 세부사항을 유치원 규칙에 미기재

⇒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지원

□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문제

- '유치원 3법' 입법('20.7.30.시행),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전면 시행('20.3월) 등의 제도를 마련했으나 지속적인 현장 안착 지원이 필요

- 감사 거부 또는 감사처분 미이행 등 사립유치원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민의 신뢰회복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

※ (언론보도) 유치원비로 '성 박물관'을?...'미이행'유치원 186곳은 어디?(KBS, '20.10.14.)

(국감) 권인숙 의원, 국감에서 감사처분 미이행 및 감사거부 유치원 관련 질의

⇒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통한 對국민 신뢰 확보

Ⅱ. 추진 경과

□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('18. 10.)

- 유아의 학습권 보장, 투명한 회계 운영, 학부모 참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「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」 발표
 -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단계적 도입 추진* 결과 전면 도입 완료('20.3.)
 - * (1단계 : '19.3월) 1,320개원(현원 200명 이상 567개원 및 희망 753개원)
 - (전면도입: '20.3월) 3,584개원(1단계 유치원 및 신규 2,264개원을 포함한 모든 사립유치원)

□ '유치원 3법' 국회 본회의 의결('20. 1.)

- 시·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일부 유치원 설립자의 교비 사적 이용 및 부실 급식 실태 등 사회적 논란 야기
 - 「사립학교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학교급식법」 국회 본회의 의결('20.1.) 및 시행
 - ※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, 유치원의 학교 급식 시설·설비 기준을 초·중등 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, 행정처분 받은 유치원의 정보 등을 공표

Ⅲ. 주요 과제

구분		과제내용
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	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	①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 확대
		② 방과후 과정비 한시적 확대 지원
		③ 적립금 제도 개선 및 적립내역 공시 도입
		④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가업상속 공제 추진
	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지원	⑤ 사립교원 기본급 보조 인상 및 육아휴직 수당 지원
		⑥ 교직원 보수 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지침 제정
사립유치원의 투명성·책무성 강화	①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안착 지원	
	② '처음학교로'의 서비스 질 제고	
	③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 활성화 지원	
	④ 감사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	
	⑤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 근절	
	⑥ 폐원 기준 정비 및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	

1.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·재정 지원

①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 확대

- (누리과정 지원금 인상)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'20~'21년 2년 연속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
 - ※ 누리과정 지원 단가: ('12)20만원 → ('13~'19)22만원 → ('20)24만원 → ('21)26만원
- (운영비 보조 확대) 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 유치원 등 건전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 단계적 인상*으로 운영의 안정성 확보
 -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유치원** 등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비 추가 지원 또는 교재교구비 등 지원 확대
 - * 학급운영비(급당): ('11)20만원 → ('12~'18)25만원 → ('19)40만원 → ('20)42만원 → ('21)45만원
 - ** 현원 또는 원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유치원 등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

② 방과후 과정비 한시적 확대 지원

- 전면 원격수업 기간* 중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 지원 및 안정적 돌봄 제공
 - * 경기, 대구, 경북, 강원 등의 일부지역은 '21.2.까지 유치종교 전면 원격수업 연장 결정
 - 기존 '방과후 과정 신청 유아'에 한해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'전체 재원 유아*' 대상으로 지원 확대('21. 1~2월)
 - * 원격수업 기간 중 미신청 유아의 경우에도 돌봄 제공('20.5.25.~)
 - 감염우려로 인한 미등원* 및 등원제한 조치**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방과후 과정비 정상 지원('20~)
 - * 「유아학비 지원계획」 상 '교육일수 인정특례'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일수 확대(30일→60일)
 - ** 교육일수 인정특례 상 '공권력 행사에 의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'로 간주

③ 적립금 제도 개선 및 적립내역 공시 도입

- (적립금 제도 개선)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·보수,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원활한 적립금 운영 지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
【 적립금 제도개선(안) 】

- ❖ (적립기준 변경) 노후건축물의 경우에도 적립 사유 발생 시 관할청 승인 하에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재원의 5~10% 이내 운용 및 5년의 적립기간*을 원칙으로 하여 무분별한 적립이나 고의로 적립금을 미집행하는 사례 방지
 - * 단, 관할청이 연장 사유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 적립기간 연장 가능
- ❖ (통학차량 적립금 명시) 유아의 통학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통학차량 적립금을 둘 수 있도록 명시 ※ 단, 적립금액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한도로 함

- (적립내역 공시 도입)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하여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에 기여
 - ※ 사립대학 적립금은 연1회(8월 결산) 공시하도록 규정(「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시행령 별표2)

④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가업상속 공제 추진

-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10년 이상 운영한 사립유치원을 '가업상속 공제 대상' 포함 추진
 - * 유치원3법 통과 등으로 공공성 확보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, 다만 상속 개시 후 7년 이내 폐원 시 상속세 부과

2.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

⑤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 인상 및 육아휴직 수당 지원

- (기본급 보조 인상)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 진작, 역량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기본급 보조 지원 단계적 인상* 추진 중
 - * ('19년) 월65만원 → ('20년) 68만원 → ('21년) 71만원 ※ 장기근속수당 3만원 포함
- (육아휴직 수당 지원) 사립학교법 시행령* 신설에 따라 사립 교원의 '육아휴직'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('22년~)
 - ※ 제24조의6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...(중략) ... 국립·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. (유치원은 '22.3.25 시행)

⑥ 교직원 보수 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지침 제정

-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*에 따라 단위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급여체계 마련 유도
 - * 제10조(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) ① 유치원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
- (현장 지원) '봉급과 수당 지급 기준' 관련 지침(21.제정예정)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급여 지급 기준이 마련·기재될 수 있도록 지원
- (점검·관리) 시도교육청은 관련 지침(21.제정예정)을 활용하여 단위 유치원의 공시 정보 등을 점검·관리하여 유치원 현장의 운영 투명성 제고

3. 사립유치원 투명성·책임성 강화

①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('20년 전면 도입 완료) 안착 지원

- (현장 안착 지원) 투명한 회계 운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및 '행복한 생애 처음학교' 기틀 마련을 위해 현장 안착 지속 지원
 -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접속환경을 개선하고 상시 사용자지원체계 강화*를 통해 연수 및 운영 내실화
 - * 시도 상시지원조직 운영, 대표강사 및 컨설팅 지원(공립위주에서 우수 사립사용자로 지원 확대)
 -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'찾아가는 간담회*'를 개최하고 실제 사용자 의견 수렴 후 기능 및 제도를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(피드백) 강화
 - * ('19) 16개 시도, ('20) 7개 시도, ('21) '20년 미 실시 시도 우선 추진 및 확대
- (성과 점검)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을 활용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지표 개발 및 분석·환류로 국민 신뢰회복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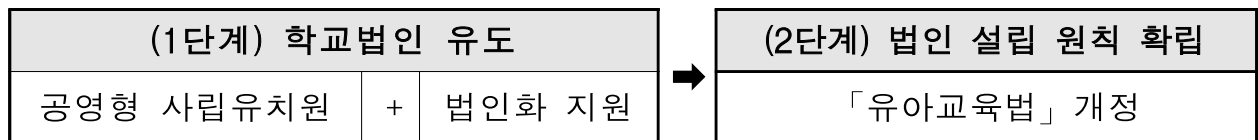
②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'처음학교로'의 서비스 질 제고

- (모바일 서비스 도입) '처음학교로('19년 전면 도입 완료)'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여 유치원 입학 과정의 편의성 및 신뢰도 강화
 - 모바일 서비스 구축*을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에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 만족도 향상
 - * 서비스(안) : 유아 등록, 인근 유치원 검색 및 접수, 선발결과 확인, 희망 유치원 등록 등

③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 활성화 지원

- (기본방향) '학교'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법인형태로 전환 추진

【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검토(안) 】



- (1단계: 학교법인 유도) 공영형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업 연장을 추진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유도

- ①(사업 연장)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 연장을 추진함으로써 공영형 유치원 활성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속 유도
※ 3년간('19~'21) 공영형 유치원 사업(특교) 추진 중
- ②(인건비 지원) 사업 종료 후 법인 전환 유치원의 안정적인 초기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 추진
- (2단계: 법인 설립 원칙 확립)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 시 학교법인(또는 비영리법인)을 원칙으로 하도록 「유아교육법」 등 개정 추진

【 참고 : 다양한 형태의 공공성 강화 모델 유치원 】

구분	정의	현황 (누계, '20년 기준)	성격
매입형	공립 선호 높으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및 공립유치원 확충이 곤란한 지역의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	35개 원 ('19) 5개원, ('20) 30개원	사립→공립
공영형	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에 준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	8개 원 ('17) 2개원, ('18) 3개원, ('19) 2개원, ('20) 1개원	사립
부모 협동형	유치원 재원 대상인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유치원	2개 원 ('19) 1개원, ('20) 1개원	사립

④ 감사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

- 사립유치원의 감사자료제출 의무 이행 유도 및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자료제출 명령을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신설*

【 *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1의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】

위반행위	처분 기준		
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위반
자. 「사립학교법」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사립학교법」 제48조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유아모집 정지 6개월	유아모집 정지 1년	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

⑤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 근절

- 유아 영어학원 등에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상 최고 한도액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*

※ 향후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유치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「유아교육법」상 처벌 대상에 추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7조②제1호에 준하여 규정)

【 *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】

위반행위	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	현행	200	300	500
	개정	300	400	500
나.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현행	100	200	300
	개정	300	400	500

⑥ 폐원 기준 정비 및 폐쇄인가 처리 기한 연장

- (폐원 기준 정비)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도별 교육규칙 등을 통해 폐원 기준을 정비하되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확립
 - ※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방지를 위해 교육감이 폐원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「유아교육법」 시행령 개정('19.8.6 공포)
 - ※ 전북, 전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규칙 등을 통해 폐원 기준 정비 완료

【 폐원 인가 기준 예시(안) 】

- ❖ (원칙)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폐원 지양
- ❖ (필수요건) 유아지원계획, 감사 및 행정조치 완료 여부
 - (유아지원계획) 전원조치 계획, 폐원 예정 재원 유아의 학부모 2/3이상 동의
 - (감사 및 행정조치 완료 여부) 감사 실시 및 조치사항 확인, 수사 및 소송 등 진행 중인 경우 완료 후 폐원 검토

- (폐쇄인가 처리 기한 연장) 관할청이 폐쇄인가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
 - ※ 현행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폐쇄인가 처리기한은 15일, 위치 변경인가는 30일, 설립·경영자 변경 인가는 15일 이내